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1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누10181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피고, 피항소인	○○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윤○○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5구합2042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1. 14.
판 결 선 고	2025. 1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9. 18. 원고에게 한 2019년도 3월분 주민세(종업원분) 59,508,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모회사로서 자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이다.

2) C은 이 사건 회사의 창업자로서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외이사,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대표이사, 2015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사내이사를 역임하였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계약 내용 등

1) 원고는 2017. 7. 7.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C과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 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옵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옵션계약서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C에게 제1조의 대상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제공하고, 관련하여 원고와 C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대상주식에 대한 매도청구권 Call Option)

(1) 대상주식은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회사 발행 보통주식 7,000,000주(이하, '대상주식')이다.

(2) C은 원고로부터 본 합의서일로부터 36개월 내에 주당 4,020원(옵션계약서일 종가)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보유한다.

(3) C은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행사대금을 은행계좌(계좌번호 생략)에 입금하며, 원고는 C의 증권계좌로 행사주식의 주권을 이체한다.

(4) 본 매도청구권은 제3자에게 양도 불가하다.

제2조(매도청구권 행사주식에 대한 후속 합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1

(1) C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는 매각할 수 없다.
(2) C이 본 계약 이전에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하여 매각 시 원고와 협의한다.
(3)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조세는 각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 계약의 협상, 체결 이행에 소요된 각 당사자의 비용 또한 각자 부담한다.

2) C은 2019. 3. 20. 이 사건 옵션계약상 대상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매수청구권'이라 한다)를 행사하였고, 이에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고,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매매대상 주식의 매매)

(1) 원고는 보통주식 7,000,000주(이하, '매매대상 주식')를 C에게 매도한다.
(2) 매매대상 주식의 매매가액은 금 2,814,000,000원(주당 매매가격은 4,020원)이다. 주당매매 가격 결정은 원고와 C이 체결한 2017. 7. 7. 이 사건 옵션계약서에 따른다.
(3) 원고는 계약일에 C이 지정하는 증권계좌로 매매대상 주식의 주권을 이체하고, C은 매매대금을 입금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입금한다.
(4) 주식매매의 효력은 본 계약일에 발생한다.

제2조(후속 합의)

(1) C은 매매대상 주식과 2017. 7. 7. 원고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는 매각할 수 없다.
(2) C이 2017. 7. 6. 이전에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하여도 원고의 동의하에 매각할 수 있다.
(3) C은 본 계약일로부터 10년간 회사를 퇴직하거나, 동종업체 겸업을 할 수 없다.
(4)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조세는 각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 계약의 협상, 체결 이행에 소요된 각 당사자의 비용 또한 각자 부담한다.

3) C은 이 사건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행사일인 2019. 3. 20.의 종가인 5,160원과 행사가격인 4,020원의 차액인 1,140원을 1주당 행사이익으로 하여 총 7,980,000,0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1

원(= 1,140원 × 7,000,000주)의 행사이익(이하 '이 사건 행사이익'이라 한다)을 얻었다.

4) 한편, 원고는 2019. 3. 20. C을 원고의 재무팀 계약직으로 입사시켰다가 같은 날 퇴사시켰고, 이 사건 행사이익인 7,980,000,000원을 특별상여로 지급 처리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개인지급대장(3월재직급여) 부분에 기재하였다.

다. 피고의 처분 경위와 내용 등

1) 원고는 2019. 4. 9.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이 사건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포함시켜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2019. 4. 10. 피고에게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행사이익이 2019년 3월분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 근로소득임에도 원고가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2023. 9. 18. 원고에게 7,9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9년 3월분 주민세(종업원분) 59,508,0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0.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1. 1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매수청구권은 콜옵션(Call Option)으로서 근로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1

스톡옵션(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과는 그 형식과 법률상 의미가 다르다. 콜옵션 행사에 따른 이 사건 행사이익은 구 소득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이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C은 이 사건 회사의 창업자이자 임원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뿐, 원고에게 고용된 종업원이 아니었으므로, C을 원고의 종업원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행사이익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415 판결 등 참조).

한편,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콜옵션(Call Option)과 스톡옵션(Stock Option)의 구별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파생상품의 기본적 구성요소 중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1

하나인 옵션(Option)에 대하여, "당사자 어느 한 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제2호).

장래 일정한 날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기초자산을 일정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콜옵션(Call Option)이라 하고, 매도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풋옵션(Put Option)이라 한다. 콜옵션과 풋옵션을 발행하는 매도자는 보험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그 매수자는 보험가입자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

옵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기초자산'이라고 하고, 사전에 정해진 기초자산의 매수·매도가격을 '행사가격'이라고 한다. 옵션매수인이 옵션 매수에 대한 대가로 옵션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프리미엄'이다. 옵션 매수자는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대신 기초자산을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며, 옵션 보유자라고 한다. 옵션 매도자는 옵션을 발행하여 매도하고 그 대가를 프리미엄으로 받으며, 옵션 발행자라고 한다.

나) 스톡옵션(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자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이제까지 제공하거나 장래 제공할 역무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권리로서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행사 기간 내에 일정한 행사가격으로 일정한 분량의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임직원에 대한 보수지급의 한 방법으로서 채택되고 있다. 즉,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주식의 시가가 스톡옵션 행사가액을 상회할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주식의 시가와 스톡옵션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스톡옵션 행사이익)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1

얻게 되는 것이다.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에서는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스톡옵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콜옵션으로 회사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특수한 형태의 콜옵션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스톡옵션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회사 주식의 시가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기는 하나 당해 회사의 실적이 그 주가를 형성하는 중대한 요소의 하나이고 그러한 기업의 실적은 임직원이 당해 회사에 제공하는 근로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능력 있는 임직원의 계속 근로가 그 실적의 향상 나아가 주가의 상승에 공헌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는 믿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⑤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수청구권은 이 사건 옵션계약상의 '콜옵션'이라는 명칭과 달리 그 실질은 스톡옵션 즉,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고, 본질적으로 이 사건 행사이익은 C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매수청구권을 부여한 목적은 근본적으로 C의 이 사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1

회사(자회사) 및 원고(모회사)에 대한 공헌에 보답하는 한편, 장래 근로의 계속에 대한 동기부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옵션계약 및 주식매매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매수청구권은 프리미엄이 존재하지 않고, 그 행사기간은 위 옵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의 단기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사건 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원고의 동의 없이 매도할 수 없고, C은 위 주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하거나 동종업체 겸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즉, 원칙적으로 C의 근로 계속을 이 사건 매수청구권 행사의 조건으로 하고 있다.

② 원고가 C에게 부여한 이 사건 매수청구권은 C의 경제적 이익을 주식의 시가와 결부시킴으로써 필요한 인재를 확보·유지하는 한편, 이 사건 매수청구권을 부여받은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실적향상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도록 노력하게 하고, 그러한 노력에 의하여 주가가 상승할 경우 C이 이 사건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행사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에게 이 사건 매수청구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행사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은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C의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행사이익을 기대하여 이 사건 매수청구권을 부여받고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물론 이 사건 행사이익의 발생 유무 및 액수는 이 사건 매수청구권 부여 후의 주가의 변동 및 C의 이 사건 매수청구권 행사 시기에 대한 판단에 의해 영향을 받고, C이 제공한 근로의 질 내지 양과 반드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C이 일단 이 사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주식을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1

전에 정하여진 행사가격으로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행사 시점에 확정된 시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C에게 부여하며, C은 그 결과로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는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매수청구권 부여 당시 이 사건 매수청구권의 내용, 행사방법 등을 사전에 정함으로써 결국 원고가 C에게 권리행사 시점에 있어서의 주가와 권리행사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이전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를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C은 이 사건 행사이익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행사이익에 상당하는 경제적 희생을 지불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C의 경제적 이익과 원고의 경제적 희생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C이 얻은 이 사건 행사이익은 C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C이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이 C이 얻은 경제적 이익과의 사이에 결정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제17호를 신설하여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당해 법인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였는데,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스톡옵션의 성격을 지닌 이 사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원고는, 원고가 C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이 원고를 위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1

여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를 처리한 사실도 없어 결국 원고가 C의 고용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이 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에 관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상여, 수당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소득에 해당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사용자와 급여 지급자가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또한 소득세법은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소득을 그 원천 내지 성질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소득금액의 계산, 세율의 적용 등에 있어서 각각의 담세력의 차이를 고려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급여의 지급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소득의 성질이나 담세력에 어떠한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사용자와 급여 지급 주체가 일치될 것을 요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와 급여 지급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급여가 근로의 대가 내지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작 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에 불구하고 실질이 그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이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원인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여 제공한 노무의 대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자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인 C에게 부여한 이 사건 매수청구권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원인'에 기초하여 제공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1

C의 비독립적 노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이 사건에 있어서 사용자와 이 사건 매수청구권 부여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수청구권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5172 판결 등에서 '모회사가 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금품 내지 경제적 이익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요건 충족 여부

1)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3호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는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 제3항에서는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종업원의 범위에 대한 사항을 위임받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은 제1항 본문에서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 ②, ③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1

C과 관련된 주민세(종업원분)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모회사인 원고가 자회사에 근무하는 C에게 지급한 이 사건 행사이익은 C의 근로소득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8호에서는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임직원' 역시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대상에서 규정한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3항에서는 해당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규정상의 임직원을 반드시 원고 주장과 같이 해당 사업소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② 더욱이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행사이익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C을 원고의 재무팀 계약직으로 입사시켰다가 같은 날 퇴사시키면서 위 행사이익 7,980,000,000원을 특별상여로 지급 처리하였으며, 원고는 C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도 하였다.

③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 주장처럼 C이 실제로 원고의 사업소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원고의 종전 과세 신고 내용과도 모순되게 이 사건의 경우 C과 관련된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라. 소결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위법사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달리 이를 취소할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1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

판사 송○○

판사 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1

[별지]

관계 법령

■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권면액)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구 소득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1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1

제75조(납세의무자)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등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끝.